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33호, **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6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하여 2026년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하여 변경되었음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20,418백만원에서 34,354백만원으로 13,936백만원 증가하였음
- 나. 이에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13,936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27,360백만원에서 41,296백만원으로 13,936백만원(50.9%) 증가되었음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

[수입계획]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67,707,372	81,643,625	13,936,253	20.6
세외수입	47,289,000	47,289,000	-	-
경상적세외수입	1,094,000	1,094,000	-	-
이자수입	1,094,000	1,094,00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1,094,000	1,094,000	-	-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등	46,195,000	46,195,000	-	-
부담금	46,195,000	46,195,000	-	-
부담금	46,195,000	46,195,000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보전수입등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예치금회수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예치금회수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
[지출계획]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67,707,372	81,643,625	13,936,253	20.6
도로시설물관리	40,332,274	40,332,274	-	-
도로굴착복구(도로굴착복구기금)	39,900,000	39,900,000	-	-
도로굴착복구공사	39,900,000	39,900,000	-	-
시설비 및 부대비	39,900,000	39,900,000	-	-
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432,274	432,274	-	-
일반운영비	432,274	432,274	-	-
재무활동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보전지출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여유자금 예치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일반예치금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행정운영경비	15,000	15,000	-	-
기본경비	15,000	15,000	-	-
기금관리비	15,000	15,000	-	-
일반운영비	15,000	15,000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139억 3,6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**여유자금예치**를 139억 3,6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273억 6,000만원)보다 50.9%, 139억 3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, 연구, 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